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일: 2013.11.07

제정일: 2007.01.02

담당부서: 연구처 - 연구윤리지원단(02-2123-214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Yonsei University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타인에게 위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교 연구윤리지침에서 정한다.<개정 2010. 2. 9>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11.07>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 혹은 출판을 위해 심사 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2. 9>

6. <삭제 2009.8.13>

7. <삭제 2010.2.9>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2. 9>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소속등)

①위원회는 연구처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②의료원과 원주캠퍼스에 별도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위원과 6인의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은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처장으로 하며, 추천직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추천직위원의 임기)

추천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처장으로 한다.<개정 2010. 2. 9>
- ②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제보자는 연구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9>
- ②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0. 2. 9>

제13조의 2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 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3.11.07]

제14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연구처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10. 2. 9>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개정 2010. 2. 9>
- 1. 제보내용이 제2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삭제 2012.02.28>

제15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6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5. 15.>
- ②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0% 이상 위촉한다.<개정 2012.02.28>
-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11.07>

제18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제보자, 피조사자 및 조사에 작·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제20조 (제척·기피 및 회피)

- ①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삭제 2013.11.07>

제22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삭제 2013.11.07>
- ②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13.11.07>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삭제 2013.11.07>
 6. 조사위원 명단

제23조 (판정)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23조의 2 (이의신청 등)

-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조사를 실시한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11.07]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4조 (결과에 대한 조치)

- ①위원회는 총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1. 부정행위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②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지원부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6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7조 제1항)은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4조 제2항 제3호, 제17조 제2항)은 2012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3호, 제13조의 2(신설), 제17조 제4항, 제19조 제4항, 제21조(삭제), 제22조 제1항(삭제), 제2항, 제23조의 2(신설))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